

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표

2023. 05.



고용노동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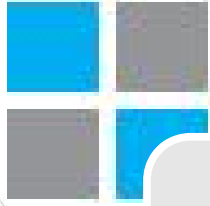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평가항목 총괄표

분야	평가항목	세부 평가내용	배점
합 계			1,000
A 운 영 체 계	소 계		400
	A.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	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	30
		2 업무관리체계	20
	A.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(인적기준)	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	90
		2 직원 교육훈련 실시	120
	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(물적기준)	1 장비의 유지, 관리 적정성	40
		2 장비활용 실적	30
		3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	10
	A.4 사업장 관리	1 업무 표준의 수립	20 (-10~+10)
		2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관리	40
	가 감 점 항 목	1 최근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	최대 +10
		2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(처분개월수별 -30점, 최대 -80점)	최대 -80
		3 최근 1년 이내 시정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(건별 -5점, 최대 -20점)	최대 -20
	A.6 종합화	1 종합기술지원(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)	최대 +10
B 업 무 성 과	소 계		600
	B.1 기술지도의 총실성	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	190
		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	200
		3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	50
		4 위험성평가 신청 및 인정율	40
		5 위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	최대 -30
	B.2 재해감소	2.1 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	50
		2.2 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	20
	B.3 만족도 및 우수사례	3.1 지도사업장 만족도	40
		3.2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노력도	10 (+20)
	가 감 점 항 목	4.1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(건별 -10점, 최대 -100점)	최대 -100
		4.2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(건별 -10점, 최대 -100점)	최대 -100
		4.3 기술지도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(건별 20점, 최대 100점)	최대 +100



A. 운영체제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

A.1.1	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(배점: 30)	
평가항목 A.1.1	평가기준 (배점: 30, 감점: -5)	평가결과
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	①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양호하고 정기적인 자체평가 및 보완 등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	☐ 30
	②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양호하나 자체평가 및 보완 등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	☐ 20
	③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경우	☐ 10
	④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이 없는 경우	☐ 0
	문서화 여부 (감점: -5점)	☐ -5 ☐ -3 ☐ -2
평 가 취 지	○ 연간 운영방침 및 위탁사업장 관리 등 사업계획 수립/평가/기록 및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체계적인 보건관리를 통한 현장의 보건관리 내실화 향상 및 개선 활동 제고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방침 및 사업(업무) 계획 수립의 적정성 평가 ○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문서화 여부, 내용의 충실도(운영방침, 목표관리, 인력별 운영 계획 등), 기록관리 등 수립된 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여부,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통한 보완사항 등을 사업에 반영하는지 여부 평가 ☐ 판단기준 [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계획] ○ ❶ 운영방침, ❷ 목표관리(업무상질병 감소, 질식재해 감소 등), ❸ 인력별(의사, 간호사, 산업 위생 분야) 운영계획, ❹ 위탁사업장 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- 위 4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내용이 적정하면 “양호”, 일부라도 누락되거나 작성 내용이 적정하지 않으면 “미흡” [자체평가 및 보완 등 개선노력] ○ 위탁관리 사업장별 기록 관리, 정기적인 ❶ 자체평가 및 ❷ 보완(개선) 사항 반영 결과물 등이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	
증빙서류	○ 기관 및 위탁사업장의 연간 보건관리 위탁(대행) 관련 사업계획, 자체평가 개선결과물	

A.1.2	업무관리체계 (배점: 20)	
평가항목 A.1.2	평가기준 (배점: 20, 감점: -5)	평가결과
업무관리체계 (업무분장)	①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적정하고, 보건관리 위탁 업무 관련 보고서(서류)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	☐ 20
	②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적정하나, 보건관리 위탁 업무 관련 보고서(서류)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미흡한 경우	☐ 10
	③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미흡하거나, 보건관리 위탁업무 관련 보고서(서류)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미흡한 경우	☐ 5
	④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되어있지 않거나, 관행적으로 분장하여 시행하는 경우	☐ 0
	문서화 여부 (감점: -5점)	☐ -5 ☐ -3 ☐ -2
평 가 취 지	○ 기관의 조직 및 업무분장, 문서관리 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위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 사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의 조직도, 업무분장, 문서관리, 권한과 임무, 위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서화 및 실질적인 실행여부를 평가 ☐ 판단기준 ○ 조직도 및 업무분장은 업무 총괄책임자, 책임구역 또는 사업장을 명확히 하고, 대행요원별 유기적인 업무 협조 및 장비 책임자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- 의사, 간호사,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 등 직종별 업무분장 적정성 및 누락여부 확인 ※ 인력 변경 시 수행인력 변경등록일 기준 30일(ex) 10월 7일 → 11월 6일) 이내 업무 분장을 최신화하여야 함 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 및 사업장 관리카드 등 위탁업무 관련 보고서(서류)가 문서화된 업무 분장에 따라 명확히 작성되고,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	
증빙서류	○ 조직도·업무분장표 등 문서화된 서류, 상태보고서, 사업장관리카드, 결재관련 서류	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(인적기준)

A.2.1	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(배점: 90)				
평가항목 A.2.1.1	평가기준 (배점: 40)			평가결과	
법정인력의 경력	① 개인별 평균 배점이 4.2점 이상			☐ 40	
	② 개인별 평균 배점이 3.7점 이상			☐ 30	
	③ 개인별 평균 배점이 3.2점 이상			☐ 20	
	④ 개인별 평균 배점이 3.2점 미만			☐ 10	
평 가 취 지					
○ 위탁 업무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자격별 경력 연수(누적)를 토대로 기관의 전문 인력 보유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 보건관리 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					
평 가 내 용					
☐ 평가대상					
대상인력		적용요건			
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* (추가인력 평가 제외)		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(이직자, 퇴직자 포함) 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 제외 6) 업무분장 상에 포함			
* 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8]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참고					
☐ 경력 산정 기준					
○ 산업보건·위생분야 : 자격 취득 후 사업장 보건관리자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, 작업환경측정기관, 보건관리전문기관,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의 산업보건·위생분야 실무경력					
○ 의사, 간호사 분야 : 면허 취득 후 사업장 보건관리자(또는 산업보건의), 일반건강진단기관, 특수건강진단기관, 보건관리전문기관,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산업보건분야 실무경력					
※ 단, 일반병원 등 일반 보건 경력 제외					
○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가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)					
☐ 평균 배점 산출방법					
① 자격별 실무경력 누적연수를 토대로 하단 <표>에서 개인별 점수 산출 후					
② 개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대상인원 수로 나누어 평균 배점 산출					
구분	자 격	산업보건 실무 경력 누적연수(1인당)			
		15년 이상	10년 이상	5년 이상	5년 미만
㉠	산업보건지도사, 산업위생관리기술사	5.0	4.5	4.0	3.5
㉡	산업위생관리기사,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	4.5	4.0	3.5	3.0
㉢	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	4.0	3.5	3.0	2.5
㉣	작업환경의학/예방의학 전문의	5.0			4.5
㉤	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	5.0	4.5	4.0	3.5
예)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(경력 7년),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명(경력 3년), 간호사 2명(경력 16년, 경력 14년), 작업환경의학전문 의 1명(경력 2년)일 경우 $\Rightarrow (4.0\text{점}+2.5\text{점}+(4.5\text{점}+4.0\text{점})+4.5\text{점}) / 5\text{명} = 3.9\text{점} \rightarrow '30'$					
증빙서류					
○ 자격증, 면허증, 경력증명서 등					

A.2.1	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(배점: 90)														
평가항목 A.2.1.2	평가기준 (배점: 20)		평가결과												
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	①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6점 이상	☐ 20													
	②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4점 이상	☐ 15													
	③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2점 이상	☐ 10													
	④ 전문인력 추가확보가 없는 경우	☐ 5													
평 가 취 지															
○ 법정 보유 기준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문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하여 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 유도															
평 가 내 용															
☐ 평가방법 ○ 법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추가로 지정된 채용 인력에 대하여 자격(면허)증, 근로계약서, 임금지급 대장, 근무형태, 출근부, 업무일지, 상태보고서 서명 여부 등을 중점 확인															
☐ 평가대상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대상인력</th> <th>적용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을 "초과"하여 지정된 인력</td> <td> 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(이직자, 퇴직자 포함) 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 제외 6) 업무분장 상에 포함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추가인력이 겸직인 경우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8]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참고), 해당 점수의 50% 반영				대상인력	적용요건	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을 "초과"하여 지정된 인력	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(이직자, 퇴직자 포함) 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 제외 6) 업무분장 상에 포함								
대상인력	적용요건														
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을 "초과"하여 지정된 인력	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(이직자, 퇴직자 포함) 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 제외 6) 업무분장 상에 포함														
☐ 자격별 합산점수 산출방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①의사, 지도사, 기술사, 산업전문간호사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②기사, 간호사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③산업기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자격별 가중치</td> <td>6점</td> <td>4점</td> <td>2점</td> </tr> <tr> <td>합산점수 산출산식</td> <td colspan="3">$\sum \text{자격 분야별 추가 인원} \times \text{자격별 가중치} = \underline{\hspace{2cm}} \text{점}$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1인이 다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, 상위 자격 1개 점수만 적용 ※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				구분	①의사, 지도사, 기술사, 산업전문간호사	②기사, 간호사	③산업기사	자격별 가중치	6점	4점	2점	합산점수 산출산식	$\sum \text{자격 분야별 추가 인원} \times \text{자격별 가중치} = \underline{\hspace{2cm}} \text{점}$		
구분	①의사, 지도사, 기술사, 산업전문간호사	②기사, 간호사	③산업기사												
자격별 가중치	6점	4점	2점												
합산점수 산출산식	$\sum \text{자격 분야별 추가 인원} \times \text{자격별 가중치} = \underline{\hspace{2cm}} \text{점}$														
증빙서류															
○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등															

A.2.1	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(배점: 90)					
평가항목 A.2.1.3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				
법정인력 업무전문화 노력 (업무전담 및 정규직화)	① 위탁한계사업장 : _____개소 이하 ② 시행령 [별표8] 자격별 인력의 합 : _____명 - 가) 인력 : _____명×2(가중치) = _____명 - 나),다),라) 인력 : _____명(인원수) ③ 법정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합 : _____명 - 가) 인력 : _____명×2(가중치) = _____명 - 나),다),라) 인력 : _____명(인원수) ⇒ (③÷②)×30점 = _____점 (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	_____점 (최대 30점)				
평 가 취 지						
○ 전체인력 중 정규직 인력 비율에 대한 평가로 업무전담 및 인력의 정규직화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예방활동 전개 유도						
평 가 내 용						
☐ 평가방법 ○ 위탁한계 사업장수에 따른 법정 인력기준 인원수 대비 법정 최소 정원의 정규직 현원 비율로 평가						
☐ 평가대상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대상인력</th> <th>적용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* (추가인력 평가 제외)</td> <td> 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(이직자, 퇴직자 포함) 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 6) 업무분장 상에 포함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대상인력	적용요건	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* (추가인력 평가 제외)	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(이직자, 퇴직자 포함) 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 6) 업무분장 상에 포함
대상인력	적용요건					
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* (추가인력 평가 제외)	1)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(이직자, 퇴직자 포함) 2)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) 의사, 기술사,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)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) 위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 6) 업무분장 상에 포함					
※ 정규직 인정조건 : 주당 36시간* 이상 전일근무자&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없는 경우 *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일 경우에 전일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음 (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경우에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) ※ 지도사 기관은 평가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						
증빙서류						
○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급여대장, 출근부, 자격(면허)증 등						

A.2.2	직원 교육훈련 실시(내·외부) (배점: 120)	
평가항목 A.2.2.1	평가기준 (배점: 20, 감점: -5)	평가결과
지도요원 교육· 훈련계획 수립· 이행 여부	① 교육·훈련 계획이 적정한 경우	☐ 20
	② 교육·훈련 계획이 미흡한 경우	☐ 10
	③ 교육·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	☐ 0
	문서화 여부 (감점: -5점)	☐ -5 ☐ -3 ☐ -2
평 가 취 지		
○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수준을 평가하여 지도요원 전문성 향상 유도		
평 가 내 용		
☐ 평가방법 ○ 매년 지도요원의 교육·훈련*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(종합계획 등 수립 가능)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함 * 교육·훈련 : ❶ 내부교육, ❷ 전문화교육, ❸ 세미나, ❹ 학술대회 등 ○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는 교육 이수증, 관련 문서 등을 확인		
☐ 평가대상 ○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 및 추가인력		
☐ 판단기준 ○ 교육·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- 교육·훈련계획(❶ 내부교육, ❷ 전문화 교육 ❸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) 중 1가지 이상 누락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○ 신규 입사자는 입사 3개월 이내 교육·훈련계획에 반영하고, 6개월 이내 실적을 확인 - 신규 입사자 교육계획 및 이행 누락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※ 신규 입사자 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하여, 3분기 이내(9.30)에 입사한 경우 당해 연도 교육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, 4분기(10.1~)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수립해야 함		
증빙서류		
○ 교육·훈련 계획 관련 문서(교육 이수증)		

A.2.2	직원 교육훈련 실시(내·외부) (배점: 120)	
평가항목 A.2.2.2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
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여부	① 모든 지도요원이 전문교육을 적정하게 이수	☐ 30
	② 일부 지도요원이 전문교육을 이수	☐ 15
	③ 지도요원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	☐ 0
평 가 취 지	○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여 지도요원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소속인력에 대한 교육이수증 등을 확인하여 평가 대상기간 중 전문교육 이수여부를 평가 ☐ 평가대상 ○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 및 추가인력 ☐ 평가기준 ○ 【인정기관】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공단 ○ 【인정과정】 8시간의 전문화교육(인터넷 교육 포함)을 이수한 경우 ※ 산업보건분야 학회 전후에 실시하는 전문화(PDC)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※ 평가 대상기간 중 이수한 전문교육에 대하여 평가하며, 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자가 입사 전·후 이수한 교육이 평가 대상기간에 해당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※ 평가대상기간 내 신규입사자가 입사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없을 경우, 한 단계 하향 평가(산업보건관련 교육으로 제한) ※ 법적인 의무교육(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)은 제외 ☐ 판단기준 ○ 소속인력에 대한 전문화교육 이수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평가 - 모든 지도요원(개인별)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(8시간 이상) 실시한 경우 "30" - 모든 지도요원 50% 이상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(8시간 이상) 실시한 경우 "15" - 모든 지도요원 50% 미만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(8시간 이상) 실시한 경우 "0"	
증빙서류		
○ 교육 이수증		

A.2.2	직원 교육훈련 실시(내·외부) (배점: 120)	
평가항목 A.2.2.3	평가기준 (배점: 10)	평가결과
기타 외부 일반교육 이수 여부	①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100%	☐ 10
	②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60% 이상	☐ 8
	③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40% 이상	☐ 6
	④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20% 이상	☐ 4
	⑤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20% 미만	☐ 2
평 가 취 지	○ 지도요원의 전문화교육 외에 교양 등 일반교육 이수율을 평가하여 현장 보건관리 활동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소속인력에 대한 교육이수증 등을 확인하여 평가 대상기간 중 일반교육 이수 수준을 평가 - 외부 일반교육 과정별 수료증(이수증) 및 참석하였음이 증명되는 서류 등을 확인하고, 교육 과정별 이수시간을 바탕으로 평가 ☐ 평가방법 ○ 【인정기관】 외부 전문교육기관 ○ 【인정과정】 직무수행에 보조적인 일반교육을 이수한 경우(인터넷교육과정 포함) ※ 과정예시 : CS교육, 강사전문 과정, 통계, 기업진단, 청렴, 컴퓨터, 외국어 등 ○ 【인정조건】 최소 인정 교육시간은 2시간이며, 2시간 미만의 교육을 다수 이수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내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2시간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평가 ☐ 평가대상 ○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 및 추가인력 ※ 단, 신규입사자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☐ 평가산식 ○ 이수율(%) = (외부일반교육 이수자수 ÷ 법정 및 추가 수행인력수) * 100	
증빙서류	○ 연간 교육·훈련 계획수립 문서, 기록물등록대장, 교육이수증	

A.2.2	지도요원 교육·훈련 실시(내·외부) (배점: 120)	
평가항목 A.2.2.4	평가기준 (배점: 10, 감점: -5)	평가결과
지도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	① 지도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	☐ 10
	② 지도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	☐ 0
평 가 취 지	○ 소속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도요원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업무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, 학위 수료(졸업), 대학의 강의 활동 지원, 외국어 교육, 컴퓨터 활용 교육 등을 위한 기관장의 시간배려 또는 금전적 지원 실적 유무를 평가 ☐ 판단기준 ○ 지도요원의 능력개발 관련 내부규정이 “문서화” 되어있지 않거나, 연간 사업계획 등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, 지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 ○ 시간 및 금전적 지원 실적은 관련 증빙문서(서류)가 있어야 함 (단, 도서구입은 실적에서 제외) 예시) 시간적배려 : 유급휴가, 유연근무제 시행 관련 문서 또는 서류 금전적지원 : 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예산 집행 문서 또는 서류(예> 학원수강비, 응시료) ※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	
증 빙 서 류	○ 증빙 문서(서류) 등	

A.2.2	지도요원 교육·훈련 실시(내·외부) (배점: 120)	
평가항목 A.2.2.5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
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실태	①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4회 이상 운영	☐ 20
	②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3회 이상 운영	☐ 15
	③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2회 이상 운영	☐ 10
	④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1회 이상 운영	☐ 5
	⑤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운영하지 않음	☐ 0
평 가 취 지		
○ 지식·정보의 공유를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여부 평가를 통한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 유도		
평 가 내 용		
☐ 평가방법 ○ 자체 세미나 : 산업보건에 관한 새로운 이슈나 정책방향, 지식·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발표 및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함. ○ 학습조직 :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의 교류와 공동학습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어야 함		
☐ 판단기준 ○ (참여율 인정조건) - 전체 지도요원(법정 및 추가인력)의 50% 이상 참여 시 인정 ※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율 파악 ※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계획과 결과 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운영 실적으로 불인정 ※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		
증빙서류		
○ 세미나, 학습조직 운영 서류		

A.2.2	지도요원 교육·훈련 실시(내·외부) (배점: 120)	
평가항목 A.2.2.6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
각종 학술대회 등 참여 실적	① 모든 지도요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(100%)	☐ 30
	② 지도요원의 80%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	☐ 25
	③ 지도요원의 60%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	☐ 20
	④ 지도요원의 40%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	☐ 15
	⑤ 지도요원의 20%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	☐ 10
	⑥ 지도요원의 20% 미만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	
○ 산업보건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정책 방향 등의 정보·지식 습득을 위한 산업보건관련 학술대회 참여 노력도를 평가하여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 유도		
평 가 내 용		
☐ 평가방법 ○ 평가대상기간 내 소속지도요원의 산업보건관련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 실적을 평가		
☐ 평가대상 ○ 평가대상 기간의 1/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 및 추가인력(이직자, 퇴직자 포함)		
☐ 평가산식 $\text{참석률(\%)} = (\text{연평균 학술대회 참여자수} \div \text{법정 및 추가 인력수}) * 100$		
☐ 판단기준 ○ 인정 가능한 학술대회 - 한국산업보건학회,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, 대한인간공학회,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산업 보건관련 국내 학술대회 - ICOH, AIHCe, 한중일학술집담회 등 산업보건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- 안전보건공단 주관 산업보건 관련대회 또는 세미나 -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‘연수교육’ 과정 -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‘의사 연수교육’ 과정 등 ※ 의사협회 주관 ‘의사 연수교육’ 과정의 경우, 법정 직무교육으로 참여시 평가제외		
○ 수료증이나 참가확인증이 없는 경우는 실적 미인정(단순 학회 참가자 제외) ※ 단순 학회 연회비 등 세금계산서는 불인정		
○ 가급적 자기 자격, 면허분야 학술대회 참석을 권장함		
○ (A.2.2.5)항목의 자체적으로 시행한 세미나는 동 평가 대상에서 제외		
증빙서류		
○ 수료증, 확인증		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관리)

A.3.1	장비의 유지, 관리 적정성 (배점: 40)	
평가항목 A.3.1.1	평가기준 (배점: 20, 감점: -5)	평가결과
장비관리지침 및 검·교정 여부	① 모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고 자체 지침에 따라 검·교정이 적정한 주기에 실시된 경우	☐ 20
	② 장비관리 지침을 일부 보유한 경우로써 보유 장비 관리 지침 자체 주기에 따라 검·교정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	☐ 10
	③ 장비관리 지침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 장비관리 지침의 자체 주기에 따른 검·교정 실적이 없는 경우	☐ 0
	문서화 여부 (감점: -5점)	☐ -5 ☐ -3 ☐ -2
평 가 취 지	○ 보유 장비의 정확도와 정밀도 유지·향상 등 장비의 성능 유지·관리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탁업무 수행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장비관리(운용)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유 장비의 검·교정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유해요인 및 국소배기장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유 장비의 성능 유지·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☐ 평가대상 ○ 장비관리지침 : 보유한 모든 장비를 포함해야 함 ○ 검교정 대상장비(9종) : 유량계(공기시료채취기 보정기), 표준소음발생기(주파수분석용 소음측정기 보정용), 소음측정기, 조도계,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(산소 포함), 절연저항계, 열선풍속계, 회전계(R.P.M측정기), WBGT(습구흑구 온·습도계) ☐ 판단기준 ○ 장비관리(운용)지침 : 모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 마련 유무 평가 ○ 검·교정 : 주기설정 적정성 및 누락여부 확인 ※ 검·교정 주기는 장비관리(운용)지침에 따르되, 최대 3년(36개월)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※ 장비관리(운용)지침이 없는 경우, 검·교정 주기는 3년(36개월)으로 적용 ※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는 매뉴얼 상의 센서 교체주기를 기준으로 함	
증빙서류	○ 장비운영(관리)지침, 보유 장비 현황, 검·교정 실적 등	

A.3.1	장비의 유지, 관리 적정성 (배점: 40)					
평가항목 A.3.1.2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				
장비사용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	①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며, 2개 모두 보유 장비의 기록관리가 100% 이뤄지는 경우	☐ 20				
	②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며, 2개 모두 보유 장비의 80% 이상에 대해 기록관리가 이뤄지는 경우	☐ 16				
	③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나, 보유 장비의 80% 미만에 대해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	☐ 12				
	④ 장비이력카드 또는 사용 대장 중 1개만을 보유하고 해당 부분만 기록 관리하는 경우	☐ 8				
	⑤ 장비이력카드 또는 사용 대장 중 1개만을 보유하고 기록 관리가 없는 경우	☐ 4				
	⑥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이 없음	☐ 0				
평 가 취 지						
○ 보유 장비의 이력카드, 사용 대장을 마련하고 기록 관리를 통한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탁업무 수행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						
평 가 내 용						
☐ 평가방법 ○ 보유 장비의 장비이력카드 및 장비사용대장에 대한 보유 여부 및 각각의 기록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평가						
☐ 평가대상 : 아래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대장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작업환경 관리장비(6종)</th> <th>건강관리 장비(2종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·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· 검지관 가스·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·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· 온열조건 측정기(WBGT) 및 조도계 · 직독식 유해가스농도 측정기(산소 포함) · 국소배기시설 성능 시험장비 : 스모크테스터, 청음기 또는 청음봉, 절연저항계,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,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, 회전계(R.P.M측정기)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</td> <td> ·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· 혈압계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작업환경 관리장비(6종)	건강관리 장비(2종)	·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· 검지관 가스·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·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· 온열조건 측정기(WBGT) 및 조도계 · 직독식 유해가스농도 측정기(산소 포함) · 국소배기시설 성능 시험장비 : 스모크테스터, 청음기 또는 청음봉, 절연저항계,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,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, 회전계(R.P.M측정기)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	·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· 혈압계
작업환경 관리장비(6종)	건강관리 장비(2종)					
·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· 검지관 가스·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·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· 온열조건 측정기(WBGT) 및 조도계 · 직독식 유해가스농도 측정기(산소 포함) · 국소배기시설 성능 시험장비 : 스모크테스터, 청음기 또는 청음봉, 절연저항계,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,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, 회전계(R.P.M측정기)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	·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· 혈압계					
☐ 판단기준 ○ 기록관리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뤄지는지 여부 평가 - 장비이력카드: 장비의 용도, 수리 및 점검일자, 검·교정 및 수리내역 등 - 장비사용대장: 장비 반출 및 반입 내역, 장비 보정내역 등						
증빙서류						
○ 장비이력카드, 장비사용대장 등						

A.3.2	장비활용 실적 (배점: 30)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항목 A.3.2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
장비활용 실적	분야별(작업환경관리, 건강관리) 장비에 대해 사업장 당 활용실적 산정 후 아래 표에서 점수부여	_____ 점 * 아래 표에서 최종 점수 산정																									
평 가 취 지	○ 위탁업무 수행 시 장비활용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사업장의 이해도를 증진 시키고 현장의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 가 내 용	□ 평가방법 ○ 평가대상기간 동안 위탁사업장 보건관리 시 작업환경관리장비(개인용시료채취기, 검지관, 소음측정기, 온열측정기, 조도계, 직독식 유해가스측정기,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) 및 건강관리 장비(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, 혈압계) 활용 정도를 평가 □ 평가대상 : 2개 분야별 아래 선정기준으로 각각 5개소 무작위 대상 선정 ○ 작업환경관리장비 :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○ 건강관리장비 : 장년근로자 다수 보유사업장, 요관찰자(C)/유소견자(D) 등 기초질환자 보유사업장, 뇌심혈관질환 발병사업장 ※ 단, 위탁사업장 수가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 □ 평가산식 ○ 분야별 장비활용 실적을 산출한 후 아래 <표>를 이용한 조합평가 - 작업환경관리장비 평균 활용 실적(회) = $\frac{\text{선정된사업장 작업환경관리장비 활용한 방문횟수}}{5(\text{선정된사업장수})}$ - 건강관리장비 평균 활용 실적(회) = $\frac{\text{선정된사업장 건강관리장비 활용한 방문횟수}}{5(\text{선정된사업장수})}$ 【분야별 장비활용 실적 조합표】 <table border="1"> <tr> <td></td> <td>작업환경관리장비</td> <td>3회 미만</td> <td>3회 이상</td> <td>4회 이상</td> </tr> <tr> <td>건강관리장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7회 미만</td> <td></td> <td>5</td> <td>10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7회 이상</td> <td></td> <td>10</td> <td>20</td> <td>25</td> </tr> <tr> <td>10회 이상</td> <td></td> <td>15</td> <td>25</td> <td>30</td> </tr> </table> □ 판단기준 ○ 장비활용 실적은 장비사용대장, 상태보고서 등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○ 평가 사업장의 법정 방문회수(회) 산정 시 의사는 제외 증빙서류 ○ 상태보고서, 보유장비 현황 등			작업환경관리장비	3회 미만	3회 이상	4회 이상	건강관리장비					7회 미만		5	10	15	7회 이상		10	20	25	10회 이상		15	25	30
	작업환경관리장비	3회 미만	3회 이상	4회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건강관리장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
7회 미만		5	10	15																							
7회 이상		10	20	25																							
10회 이상		15	25	30																							

A.3.3	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(배점: 10)	
평가항목 A.3.3	평가기준 (배점: 10)	평가결과
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	① 장비사용 및 보정수행 방법 모두(100%) 숙지	☐ 10
	② 장비사용 및 보정수행 방법 일부(50% 이상) 숙지	☐ 5
	③ 장비사용 및 보정수행 방법 일부(50% 미만) 숙지 미흡	☐ 0
평가취지		
○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요원(의사, 간호사,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)의 이해도를 확인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탁업무 수행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		
평가내용		
☐ 평가방법 ○ 의사, 간호사,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의 법정장비[작업환경관리장비(6종), 건강관리장비(2종)]에 대한 사용법 및 보정법에 대한 숙지상태를 면담평가		
☐ 평가대상 선정		
구분	평가대상 장비 선정기준 및 면담평가 선정방식	
대상장비	* 작업환경관리장비(6종) 및 건강관리장비(2종)에 대해 각각 2종 선정 - (작업환경관리장비) 6종 중 평가자가 2종을 임의 선정하되, 1종은 <u>정량 보정이 필요한 장비</u> (개인용 시료채취기, 소음측정기) 중에서 반드시 선정 - (건강관리장비)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, 혈압계	
대상인력	법정인력 중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 1명과 의사 또는 간호사 중 1명 임의 선정 ※ 지도사 기관(위촉된 의사만 있는 경우)은 지도사 1명만 선정	
☐ 평가항목 ○ (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 1명) 작업환경관리장비를 대상으로 총 3문항 평가 · 장비 사용법 : 선정된 장비 2종의 사용법에 대한 면담 평가(총 2문항) · 장비 보정법 : 정량 보정이 필요한 필수 선정 장비의 보정법 면담 평가(총 1문항) ○ (의사, 간호사 중 1명) 건강관리장비를 대상으로 총 2문항 평가 · 장비 사용법: 선정된 장비 2종의 사용법에 대한 면담 평가(총 2문항)		
☐ 판단기준 ○ 장비별 사용법 및 보정법은 보유 장비의 매뉴얼에 따름 ○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은 3개 문항, 의사 또는 간호사는 2개 문항을 평가하여 총 5개 문항 중 숙지상태가 양호한 문항수의 비율 산출		
☐ 평가산식 ○ 숙지율(%) = (적정 답변수 ÷ 질문수) * 100		
※ (예시) - (산업위생분야) 2종류 장비사용법은 모두 알고 있으나, 1종의 보정방법을 모를 경우⇒ (숙지율) 2회/3회 - (의사, 간호사 중 1명) 2종류 장비사용법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⇒ (숙지율) 2회/2회 ☞ (종합평가) 피평가자 2명의 통합 숙지율 산출 : (4회/5회)*100=80%로 5점 평가		
증빙서류		
○ 평가자 현장 면접 결과		

A.4 사업장 관리

A.4.1	업무 표준의 수립 (배점: 20, 가점: +10, 감점: -10)	
평가항목 A.4.1.1	평가기준 (배점: 20, 감점: -5)	평가결과
자체 업무매뉴얼의 보유 및 활용 여부	①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분야별 업무 매뉴얼이 적정하고 정기적인 현행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지도요원 교육·훈련·열람 등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	☐ 20
	②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분야별 업무 매뉴얼이 미흡하거나, 정기적인 현행화 등 일부 구성 내용이 미흡 또는 지도요원 교육·훈련·열람 등 활용이 미흡한 경우	☐ 10
	③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	☐ 0
	문서화 여부 (감점: -5점)	☐ -5 ☐ -3 ☐ -2
평 가 취 지	○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내용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현행화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수행 요원들이 숙지토록 하는 등 위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 효과를 거양하고자 함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사업장 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적절한 내용으로 문서화하여 상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, 또한 이를 업무 수행요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☐ 판단기준 ○ 업무매뉴얼은 지도요원 분야별(의사, 간호사, 산업위생)로 작성하되, 아래 내용(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직, 지도사의 업무 및 직무)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–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,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, 보호구 착용지도, 순회점검 지도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, 근로자 보건교육, 작업환경개선지도 등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○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매뉴얼이 정기적으로 현행화 해야함 ○ 업무 매뉴얼에 대한 지도요원(신규자 포함) 교육·훈련·열람 등 업무수행 시 지도요원들의 활용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	
증빙서류		
○ 지도요원 분야별(의사/간호사/산업위생분야) 업무매뉴얼		

A.4.1	업무 표준의 수립 (배점: 20점, 가점: +10점, 감점: -10점)					
평가항목 A.4.1.2	평가기준 (가점: +10, 감점: -10)	평가결과				
K2B 전산 관리의 적정성	① K2B 입력오류가 없는 경우	☐ 0				
	② K2B 입력오류 비율이 3% 미만인 경우	☐ -2				
	③ K2B 입력오류 비율이 3% 이상 ~ 10% 미만인 경우	☐ -5				
	④ K2B 입력오류 비율이 10% 이상 또는 K2B 미가입	☐ -10				
자체 평가보고서 등록 여부	① 기한 내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한 경우	☐ +5				
	②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 또는 미작성·미등록한 경우	☐ 0				
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여부	① 평가보고서 작성의 내용이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한 경우	☐ +5				
	② 평가보고서 작성의 내용이 일부라도 누락된 경우	☐ 0				
평 가 취 지						
○ K2B 전산 관리 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신뢰도 향상 유도 ○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의 이의제기 감소 및 자체 수준 향상 노력도 제고 유도						
평 가 내 용	☐ 평가 방법 ○ K2B 입력 결과를 집계하여 지연 누락 오류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○ 평가대상기간 전체 위탁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 ○ K2B 전산에 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기한 준수 및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☐ 평가 산식 $\text{입력오류 비율} = \frac{\text{상태보고서 입력 오류 건수}}{\text{평가년도 상태보고서 입력 실적}} \times 100$ ☐ 판단 기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입력 오류 산출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① 입력 오류 건수 - 임의 사업장 입력 사업장(입력된 상태보고서 수) ※공단 산재통계 조회 시 확인 - 상태보고서 입력 지연 사업장 - 상태보고서 미첨부 건수 </td> </tr> <tr> <td>② 위탁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“-10점”으로 평가</td> </tr> <tr> <td>③ 위탁사업장 정보가 최신화 되지 않은 경우(위탁사업장 주소,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K2B 전산입력 지연여부 확인(매월 상태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K2B에 등록 준수 확인) ○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 및 작성의 적정성은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후 제출기한* 내 K2B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(공고된 양식에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, 점수만 기재한 경우 불인정) *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기한 : 공고일에 안내 예정		입력 오류 산출 기준	① 입력 오류 건수 - 임의 사업장 입력 사업장(입력된 상태보고서 수) ※공단 산재통계 조회 시 확인 - 상태보고서 입력 지연 사업장 - 상태보고서 미첨부 건수	② 위탁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“-10점”으로 평가	③ 위탁사업장 정보가 최신화 되지 않은 경우(위탁사업장 주소,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)
입력 오류 산출 기준						
① 입력 오류 건수 - 임의 사업장 입력 사업장(입력된 상태보고서 수) ※공단 산재통계 조회 시 확인 - 상태보고서 입력 지연 사업장 - 상태보고서 미첨부 건수						
② 위탁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“-10점”으로 평가						
③ 위탁사업장 정보가 최신화 되지 않은 경우(위탁사업장 주소,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)						
증빙서류						
○ 기술지도 사업장 K2B 입력자료 등						

A.4.2	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관리 (배점: 40)	
평가항목 A.4.2	평가기준 (배점: 40)	평가결과
사업장 관리카드 적정성	① 사업장관리카드의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	☐ 10
	② 누락률이 20% 이하인 경우	☐ 5
	③ 누락률이 20% 초과인 경우	☐ 0
상태보고서 적정성	①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100%인 경우	☐ 30
	②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90% 이상인 경우	☐ 25
	③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80% 이상인 경우	☐ 15
	④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60% 이상인 경우	☐ 5
	⑤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60% 미만인 경우	☐ 0
평 가 취 지	○ 사업장 관리카드의 작성 및 보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위탁사업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유도하기 위함 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보건관리 상태보고서를 적기에 제공하여 보건 관리전문기관 교체에 따른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의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작성 및 내용 누락 여부 확인(필요시 사업장 방문, 팩스 등을 통한 확인) ※ 위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확인하여 평가 [사업장관리카드 적정성] ☐ 평가산식 ○ 내용 누락률(%) = (관리카드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수 ÷ 선정된 사업장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사업장 관리카드가 없는 위탁사업장이 1개소 이상 있는 경우 “0점” 평가 ○ 사업장 관리카드 내용 중 1개 이상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으로 판단 ※ 사업장 관리카드 내용 중 안전관련 부분(안전보호구, 위험기계·기구 방호조치, 무재해 운동 추진 등)에 대한 서식 또는 내용 생략 가능 ○ 산재관리번호 작성 오류로 산업재해 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관리 카드 내용 누락사업장으로 판단 ○ 사업장 관리카드와 상태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한 단계 하향 [상태보고서 적정성] ☐ 평가산식 ○ 적정비율(%) = (적정 상태보고서수 합계 ÷ 평가대상기간 법정 방문횟수 합계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상태보고서가 당일 현장에서 전달되는 체계가 아닌 기관은 “문서화”로 평가하며, 팩스 등으로 회신 받아 기관 보관용과 불일치할 경우 “0점” 평가 ○ 적정 비율 평가: 상태보고서상 방문일자 및 서명 여부, 사업장담당자 서명 여부, 사업장의 보고서에 대한 결재 유무 등의 적합 여부로 평가 - 프로그램(App) 등을 통한 상태보고서 작성도 인정	
증빙서류	○ 위탁사업장 현황, 사업장 관리카드,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등	

A.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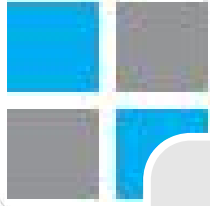
A.5.1	최근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(가점: 최대 +10점)	
평가항목 A.5.1	평가기준 (가점: 최대 +10점)	평가결과
최근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	① 대통령상: _____ 건 × 10점 = _____ 점 ② 국무총리상: _____ 건 × 8점 = _____ 점 ③ 고용노동부장관상: _____ 건 × 6점 = _____ 점 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: _____ 건 × 4점 = _____ 점 ⑤ 지자체장상 등: _____ 건 × 2점 = _____ 점 ⇒ 총점: ①+②+③+④+⑤ = _____ 점(최대 +10점)	_____ 점
평 가 취 지	○ 산업안전보건 분야 유공 기관 및 소속 지도요원의 포상실적 발굴을 통한 사기 진작 및 대외 공신력 확보 유도	
평 가 내 용	○ 평가기간 내 평가 기관 또는 소속직원이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“대통령, 국무총리, 고용노동부장관, 안전보건공단이사장, 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을 관련 상장 또는 상패 등으로 확인하여 실적 평가 * 지자체단체장 등은 지자체장(시,도), 고용부 지방관서장, 공단 일선기관장과 민간단체인 보건관련 학회 및 협회장으로 한정함 - 평가기간 내 근무하는 동안 포상한 실적에 한함(보유인력 중 포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, 포상을 받을 당시 소속기관에 한하여만 실적 인정)	
증빙서류	○ 포상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(공문, 상패, 표창장 사본 등)	

A.5.2	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(감점: 최대 -80)	
평가항목 A.5.2	평가기준 (감점: 최대 - 80점)	평가결과
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① 업무정지 처분 ____개월 × (-30)점 = ____점 ⇒ 총점: ____점(최대 -80점)	____ 점
평 가 취 지	○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	
평 가 내 용	○ 평가대상기간 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·감독 등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○ 업무정지 처분 개월 수 당 30점 감점, 최대 80점 감점 -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 ※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(예시 1) 업무정지 3.5개월 × -30점 = - 105점 → -105점 (예시 2) 업무정지 53일/30일 × -30점 = -52.9점 → -53점(소수점이하 올림)	
증빙서류	○ 처분 관련 공문	

A.5.3	최근 1년 이내 시정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(감점: 최대 -20점)	
평가항목 A.5.3	평가기준 (감점: 최대 - 20점)	평가결과
최근 1년 이내 시정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① 시정조치·경고 처분 _____건 × (- 5)점 = _____점 ⇒ 총점: _____점(최대 -20점)	_____ 점
평 가 취 지	○ 시정조치·경고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	
평 가 내 용	○ 평가대상기간 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·감독 등에 의해 시정 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○ 시정조치·경고 처분 건수 당 5점 감점, 최대 -20점 감점	
증빙서류	○ 시정 조치 관련 공문	

A.6 종합화

A.6.1	종합기술지원 (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) (가점: 최대 +10점)	
평가항목 A.6.1	평가기준 (가점: 최대 +10점)	평가결과
종합기술지원 (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)	협약 기관 간 교류실적 : _____ 건 × 1점 = _____ 점 ⇒ 총점: _____ 점(최대 10점)	_____ 점
평 가 취 지	○ 위탁 사업장 업무상질병 예방 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기관의 제한된 기술력 극복 등 상호보완 노력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를 조언·지도하는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극대화를 위해 관련분야 컨소시엄 구성 등 상호 교류실적 평가 ☐ 평가대상 및 판단근거 ○ 평가대상기간 내 컨소시엄(협약) 체결기관과의 교류실적 건수 반영 – 컨소시엄(협약)기관 간 교류실적은 구두 교류가 아닌 상호 업무 협조를 증명하는 공문이나 협약서 작성 후 시행하며 시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(사진, 결과보고서 등)을 평가 – 단, <u>동일사업자</u>¹⁾ 인 기관과 연계할 경우 평가점수의 1/2(50%) 반영 ¹⁾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,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사업장개시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 인정, 사업장 당 최대 1점 ※ 예시1) 위탁 사업장내 취급화학물질 변동시 작업환경측정기관 연계, 건강이상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연계 등 컨소시엄 기관 간 교류실적 반영 ※ 예시2) 환기장치의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환기설비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(협약 등) 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※ 예시3) 근로자 건강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감정노동,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(협약 등)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※ 예시4)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개선, 작업특성을 고려한 신체 부위별 스트레칭 제시, 개인별 운동처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(협약 등)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※ 예시5)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수준 초과(50%이상 포함)공정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기관과의 컨소시엄(협약 등)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등	
증빙서류	○ 관련 근거 문서(공문, 협약서, 결과보고서 등)	



B. 업무성과

B.1 기술지도의 충실성

B.1.1	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(배점: 190)	
평가항목 B.1.1.1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
요양 후 업무복귀 시의 업무적합성평가	① 업무적합성평가를 80% 이상 수행한 경우	☐ 30
	② 업무적합성평가를 60% 이상 수행한 경우	☐ 20
	③ 업무적합성평가를 40% 이상 수행한 경우	☐ 10
	④ 업무적합성평가를 40% 미만 수행한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산업보건과의 직무 중 업무적합성평가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체계적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 후 업무복귀 시 의사의 업무적합성 평가 여부 확인 ☐ 평가대상 ○ 산업재해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5개소 이상 선정 ※ 단,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 대상이 없는 경우 “평균점수” 부여 ○ 선정된 사업장당 업무적합성 평가 대상자를 최소 1인(최대 5인)이상 선정 ※ 총 대상자수 : 최소 5명, 최대 25명 ☐ 평가산식 ○ 실시율(%) = (업무적합성평가 실시 건수 ÷ 업무적합성평가 대상자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선정된 근로자 대비 업무적합성 평가 수행한 건수 파악 (업무적합성 평가 건수가 다수인 근로자도 1건의 평가로 인정)	
증빙서류	○ 업무적합성평가서	

B.1.1	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(배점: 190)	
평가항목 B.1.1.2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
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	①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를 8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20
	②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를 6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15
	③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를 4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10
	④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를 40% 미만 실시한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의사 및 간호사의 직무 중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지도 실시여부를 평가하여 체계적인 유소견자, 요관찰자 관리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위탁사업장의 건강진단(일반, 특수)결과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에 대한 작업배치,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, 상담 및 영양지도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여부 평가 ☐ 평가대상 ○ 건강진단(일반 및 특수)결과 유소견자(D), 요관찰자(C) 발생사업장 등 5개소 이상 선정 - 단,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(업무적합성평가) 결과 “다”, “라”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장 우선 선정 ※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 대상이 없는 경우 “평균점수” 부여 ○ 선정된 사업장당 사후지도 대상자를 최소 1인 이상 선정. ※ 총 대상자수 : 최소 5명 이상 ☐ 평가산식 ○ 실시율(%) = (사후지도를 실시한 근로자 수 ÷ 대상 근로자 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대상 근로자수 중에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지도가 이루어진 건수 파악 ※ 1명의 근로자가 다수의 사후지도를 받은 경우, 1회로 봄	
증빙서류	○ 사업장 관리카드, 상태보고서, 상담일지, 진료의뢰서 등	

B.1.1	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(배점: 190)	
평가항목 B.1.1.3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
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(의사)	①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 및 실질적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(단, 실질적인 사후조치가 80% 이상인 경우는 27점, 60% 이상인 경우는 24점 부여)	☐ 30 ☐ 27 ☐ 24
	②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하였으나, 실질적인 사후조치 이행이 60% 미만인 경우	☐ 20
	③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일부 누락	☐ 10
	④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누락	☐ 0
평 가 취 지		
○ 산업보건과의 직무 중 근로자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실시 여부를 평가하여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유도		
평 가 내 용		
☐ 평가방법 ○ 업무상질병 판정자에 대한 질병발생 원인 조사(작업환경, 근무방법 등)를 실시하고, 그에 따른 적절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지도 및 실시 여부를 평가		
☐ 평가대상 ○ 평가대상기간 내 업무상질병자 발생, 질병 유소견자(D ₁ , D _N)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(단, 소음성난청, 진폐, 일반질병 유소견자(D ₂)는 제외) - 야간작업 유소견자(D _N)는 위장관계, 내분비계, 신경계 유소견자 보유사업장 우선 선정 -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하되 5개소 미만일 경우 전수 평가 ※ 평가 대상이 없는 경우 “평균점수” 부여		
☐ 판단기준 ○ 실질적인 사후조치 : 평가기간 내 의학적 조치 지도에 대한 사후조치 실시한 건이 입증되어야 함		
증빙서류		
○ 사업장 관리카드, 상태보고서, 건강상담일지, 진료의뢰서(해당시), 업무적합성평가서(해당시) 등		

B.1.1	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(배점: 190)	
평가항목 B.1.1.4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
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율	① 위원회 참석을 80% 이상 수행한 경우	☐ 20
	② 위원회 참석을 60% 이상 수행한 경우	☐ 16
	③ 위원회 참석을 40% 이상 수행한 경우	☐ 12
	④ 위원회 참석을 20% 이상 수행한 경우	☐ 8
	⑤ 위원회 참석을 20% 미만 수행한 경우	☐ 4
	⑥ 위원회 참석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	☐ 0
평 가 취 지	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, 시행령 제35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)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지도요원의 참석률 평가를 통한 예방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분기마다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여 위탁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의 건강유지·증진활동 참여 여부를 평가 ☐ 평가대상 ○ 위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하되, 의사가 산안위에 참석한 사업장을 반드시 1개소 이상 포함하여 선정 ※ 대상 사업장이 5개소 미만일 경우 전수 평가 ※ 의사의 산안위 참석 사업장이 없는 경우, 최종 평가점수에서 한 단계 하향 평가 ※ 평가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점수보정 ☐ 평가산식 ○ 참여율(%) = (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사업장 수 ÷ 선정된 사업장 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동일한 사업장에 1회 이상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참석한 것으로 인정 ○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(서명 등 확인), 사업장관리카드, 상태보고서 등으로 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을 증빙할 때 인정 ○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접 참여가 아닌 위임장 전달 및 의견개진 등은 불인정	
증 빙 서 류	○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, 사업장관리카드, 상태보고서	

B.1.1	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(배점: 190)	
평가항목 B.1.1.5	평가기준 (배점: 10)	평가결과
보호구 착용 지도	① 보호구 착용 지도 및 실질적인 조치가 누락 없이 모두 실시된 경우	☐ 10
	② 보호구 착용 지도가 100%인 경우	☐ 8
	③ 보호구 착용 지도가 80% 이상인 경우	☐ 5
	④ 보호구 착용 지도가 80% 미만인 경우	☐ 3
평 가 취 지	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에 의거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 실시 여부 평가를 통한 사업장의 업무상질병 예방효과 거양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보호구 선정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지도 및 보호구의 착용방법 등(밀착도검사 방법 등)에 관한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☐ 평가대상 ○ 화학물질 취급, 소음 및 분진작업 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 ※ 5개소 미만은 전수 평가 ☐ 판단기준 ○ 보호구 착용 지도 : 사업장 공정, 취급 화학물질 현황 등 파악 후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및 보호구 착용 지도 여부를 평가 –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등에 ‘보호구 착용 지도’로 단순히 기록된 내용은 불인정 ○ 실질적인 조치 : 밀착도 검사 등 보호구 착용 교육, 적격품 선정방법 교육 등을 평가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실질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장 적격품 구매 관련 서류가 확인된 경우에 인정 – 교육 실시는 교육 실시일지(교육대상, 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 서명 등), 작업 중 실제 착용한 사진 첨부 등이 확인되어야 함	
증빙서류	○ 사업장관리카드,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교육 실시일지, 보호구 적격품 구매 관련 서류(사업장) 등	

B.1.1	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(배점: 190)	
평가항목 B.1.1.6	평가기준 (배점: 40)	평가결과
작업환경 개선지도	① 선정사업장 모두 개선의견 제시 및 실질적 개선이 이행된 경우 (단, 실질적 개선이 80% 이상인 경우 37점, 60% 이상인 경우 34점 부여)	☐ 40 ☐ 37 ☐ 34
	② 선정사업장의 80% 이상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	☐ 30
	③ 선정사업장의 60% 이상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	☐ 20
	④ 선정사업장의 40% 이상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	☐ 10
	⑤ 선정사업장의 40%미만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	☐ 5
평 가 취 지		
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에 의거 위탁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하여 업무상질병 예방효과 거양		
평 가 내 용		
☐ 평가방법 ○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개선의견이 적절하고,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행 되었는지를 평가		
☐ 평가대상 ○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개소 이상 임의 선정(단,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) - 노출기준 초과(50% 이상 포함) 사업장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		
☐ 판단기준 ○ 의견제시 내용 : 환기장치 성능 및 개선방안, 작업수칙, 사고시 대피요령, 명칭게시, 취급 일지 작성 및 고지(특별관리물질에 국한), 화학물질의 저장 및 빈용기 관리, 청소, 출입 금지, 흡연·음식물 섭취금지 등 ○ <u>실질적 개선이행</u> ¹⁾ 은 평가기간 내 의견 제시 후 최소 1회 이상 실적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이 입증되어야 함 ¹⁾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검진결과, 안전검사결과에서 입증되어야 하며, 환기설비는 설비개선 사진(또는 관련서류) 등 증빙되어야 함 ※ 예시1)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환기설비 개선의견 ※ 예시2) 노출기준 50% 초과 사업장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실시의견(단,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국한) ※ 예시3) 시행규칙 제190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횟수 단축의견(해당시) ※ 예시4)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한 특수검진 주기단축 의견(해당시)		
증빙서류		
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증빙서류, 개선지도 결과서 등		

B.1.1	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(배점: 190)	
평가항목 B.1.1.7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
작업장 순회점검 지도	① 순회점검 실시율이 80% 이상인 경우	☐ 20
	② 순회점검 실시율이 60% 이상인 경우	☐ 16
	③ 순회점검 실시율이 40% 이상인 경우	☐ 12
	④ 순회점검 실시율이 20% 이상인 경우	☐ 8
	⑤ 순회점검 실시율이 20% 미만인 경우	☐ 4
평 가 취 지	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 제9호에 의거 위탁 사업장의 보건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는 등 작업장 순회점검 수행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개선활동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제조업 및 비제조업에 대한 작업환경 순회점검 활동 실시율을 평가 ☐ 평가대상 ○ 위탁 사업장 중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장을 각각 2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하여 총 5개소 이상 선정 ※ 어느 한 분야가 2개소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분야에서 추가 선정(총 5개소 이상) ☐ 평가산식 ○ 실시율(%) = (사업장별 순회점검 실시회수 합 ÷ 사업장별 방문회수 합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순회점검 내용이 상태보고서 또는 순회점검표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인정 ※ 순회점검 내용 : 작업장 정리정돈상태, 보호구 비치 및 착용상태, MSDS 게시와 비치,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,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, 작업장 환기상태, 국소배기장치 운영상태, 밀폐공간 작업상태,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작업장 상태 및 사무실, 복도 및 계단, 화장실, 락카실, 샤워실, 휴게실 및 식당 등 작업장 이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상태 ※ 순회점검표 등 작성 시 점검자 서명 등 확인되는 경우 실시 인정	
증빙서류	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작업장 순회점검표	

B.1.1	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(배점: 190)		
평가항목 B1.1.8	평가기준 (배점: 20)		평가결과
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조언·지도	계획 수립률	① 보건교육계획서를 80%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	☐ 10
		② 보건교육계획서를 60%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	☐ 8
		③ 보건교육계획서를 40%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	☐ 6
		④ 보건교육계획서를 20%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	☐ 4
		⑤ 보건교육계획서를 20% 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	☐ 2
		⑥ 보건교육계획서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	☐ 0
	교육 실시율	① 보건교육을 8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10
		② 보건교육을 6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8
		③ 보건교육을 4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6
		④ 보건교육을 2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4
		⑤ 보건교육을 20% 미만 실시한 경우	☐ 2
		⑥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	☐ 0
평 가 취 지			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에 의한 산업보건교육 직접 수행을 통한 작업장 유해·위험 요인 인식 제고		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임의로 5개소 이상 위탁사업장을 선정하여 보건교육계획 수립률과 보건교육 실시율을 각각 평가하여 이를 합산 [보건교육계획 수립률] ☐ 평가산식 ○ $\text{수립률}(\%) = (\text{교육계획서 보관 사업장수} \div \text{선정사업장 수}) \times 100$ ☐ 판단기준 ○ 각 요원의 상태보고서 중 보건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도·조언한 사실이 있고, 산업(안전)보건교육계획서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※ 상태보고서에 지도·조언한 사실만 있고, 교육계획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“2점” 지도·조언한 사실이 없이 교육계획서만 확보하고 있는 경우 “0점” 으로 평가 ※ 계획서 포함 내용(교육종류 및 대상, 교육과정, 근로자 현황 등)이 미흡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[보건교육 실시율] ☐ 평가산식 ○ $\text{실시율}(\%) = (\text{교육실시 사업장 수} \div \text{선정사업장 수}) \times 100$ ☐ 판단기준 ○ 지도요원이 평가기간 중 위탁사업장 대상으로 “1시간(1회)” 교육실시 여부를 평가 - 평가대상기간 중 총 1회 실시 여부 평가 - 교육시간은 휴게시간 10분을 포함한 1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“1회”로 계산 - 동일사업장에 2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더라도 “1회”로 계산 - 교육시간이 50분 미만인 경우에는 참석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 이상이면 “1회”로 계산 - 전체 근로자 중 80% 이상 참여시 “1회”로 인정 ○ 교대작업 실시 사업장의 경우 교육 인원수를 합산하여 할 수 있음 ○ 교육시간이 표시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		
증빙서류			
○ 상태보고서, 산업(안전)보건교육계획서,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(혹은 보고서)			

B.1.2	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(배점: 200)	
평가항목 B.1.2.1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
물질별 MSDS 관리,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	① 모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해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, MSDS 관리,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지도하고, 그 중 80% 이상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	☐ 30
	② 모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해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, MSDS 관리,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지도한 경우	☐ 20
	③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, MSDS 관리,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평가대상사업장의 80% 이상 지도한 경우	☐ 10
	④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, MSDS 관리,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평가대상사업장의 80% 미만 지도한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공정별로 취급하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적정 MSDS관리, 게시, 경고표시 부착 등을 지도하고 교육을 통하여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인지도 향상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해당물질 취급공정에 MSDS 게시·비치 및 소분용기 등 취급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등 사업장 내 MSDS 제도 이행에 대한 지도내용의 적정성 평가 ☐ 평가대상 ○ 화학물질 사용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(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) ☐ 판단기준 ○ 공정별로 취급 화학물질 파악, 화학물질별 적정 MSDS를 확보토록 지도 및 신뢰성(구성, 내용, 항목 등) 검토, 취급근로자 교육 실시 등 지도내용, MSDS 게시 및 경고표시의 부착 등의 적정성 확인 - 평가기준 ①의 “실질적 조치”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이나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대한 누락확인이나 대체물질의 사용권고, MSDS에 대한 신뢰성 및 적정MSDS 확보, 소분용기 등 취급용기에 적정한 경고표시 부착 관리, 취급근로자 교육 등에 대한 지도 후 사업장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진 경우로 상태보고서, 작업장 순회점검표 또는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	
증빙서류	○ 사업장관리카드, 보건관리 상태보고서, 순회점검표, MSDS(해당시)	

B.1.2	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(배점: 200)	
평가항목 B.1.2.2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
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	①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정하고 그 중 80%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	☐ 20
	②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률이 80% 이상인 경우	☐ 15
	③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률이 60% 이상인 경우	☐ 10
	④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률이 60% 미만인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활동의 실행력 제고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,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지도,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, 무리한 힘·부자연스런자세·반복동작의 감소방법 제시 등 지도의 적정성 및 실제 이행을 평가 ☐ 평가대상 ○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또는 근골격계질환 위험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 평가(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) –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인 경우 우선 선정 ※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선정이 어려울 경우 <u>근골격계질환 고위험업종¹⁾</u>으로 선정 ¹⁾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,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, 도소매·음식·숙박업, 전문·보건·교육·여가관련서비스업,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☐ 평가산식 ○ $\text{적정률}(\%) = (\text{적정 사업장수} \div \text{선정 사업장수}) \times 100$ ☐ 판단기준 ○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: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,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,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, 바른자세, 스트레칭, 체조, 반복동작 감소방법 제시 등 지도내용이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– 평가기준 ①의 “실제 실시한 경우”란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, 작업장 순회점검표 또는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.	
증빙서류	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, 순회점검표, 기타 증빙서류	

B.1.2	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(배점: 200)	
평가항목 B.1.2.3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
근로자 건강보호·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	① 건강보호·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에 누락이 없고 그 중 80%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 (단, 실제 실시가 60% 이상인 경우 17점 부여)	☐ 20 ☐ 17
	② 건강보호·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실적이 80% 이상인 경우	☐ 15
	③ 건강보호·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실적이 60% 이상인 경우	☐ 10
	④ 건강보호·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실적이 60% 미만인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체계적인 건강증진운동 지도를 통한 사내 근로자 건강 보호·증진 활동 활성화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금연, 절주, 비만, 영양, 운동관리 등 근로자 건강보호·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내용의 적정성 평가 ☐ 평가대상 ○ 위탁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 평가 ☐ 평가산식 ○ 실시율(%) = (적정 사업장수 ÷ 선정 사업장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근로자 건강보호·증진 활동 프로그램(금연지도, 비만지도, 영양지도, 운동지도, 혈압 및 혈당관리 등) 지도 내용의 적정성 확인 – 평가기준 ①의 “실제 실시한 경우”란 근로자 건강보호·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(추진팀, 추진절차, 시행 및 평가 등) 후 실제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(계획 수립, 결과 문서 등)*로 확인되어야 함 * KOSHA-Guide H-162-2014(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)를 활용하여 작성	
증빙서류	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관련 서류	

B.1.2	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(배점: 200)	
평가항목 B.1.2.4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
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	①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에 누락이 없고 그 중 80%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	☐ 30
	②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실적이 80% 이상인 경우	☐ 20
	③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실적이 60% 이상인 경우	☐ 10
	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실적이 60% 미만인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(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)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를 통한 예방효과 거양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및 심리상담 등 조치 내용의 적정성 평가 ☐ 평가대상 ○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(장시간근로,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, 전업 차량운전, 정밀기계 조작 작업, 감정노동 종사 직종 보유 사업장 등)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(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) ☐ 평가산식 ○ 실시율(%) = (적정 사업장수 ÷ 선정 사업장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직무스트레스요인 평가,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작업전환, 휴식시간 배분, 상담치료, 건강 증진프로그램 시행 등 지도내용의 적정성 확인 ※ 직무스트레스 평가 지도는 KOSS(한국인직무스트레스평가도구), 사회심리적지수, 감정노동평가지수 등 스트레스관련 지표 및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등 관련 활동은 폭넓게 모두 인정. - 평가기준 ①의 “실제 실시한 경우”란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후 직무스트레스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 및 개선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	
증빙서류	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직무스트레스 평가결과(해당시)	

B.1.2	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(배점: 200)	
평가항목 B.1.2.5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
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지도	①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를 누락 없이 실시하고 그 중 80%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	☐ 20
	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실적이 80% 이상인 경우	☐ 15
	③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실적이 60% 이상인 경우	☐ 10
	④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실적이 60% 미만인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	
○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예방효과 거양		
평 가 내 용		
☐ 평가방법		
○ 내분비계, 순환기계 기초질환자 및 장년 근로자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발병위험도 평가를 지도하고 사후관리 실시 내용의 적정성 평가		
☐ 평가대상		
○ <u>내분비계, 순환기계 기초질환자*</u> 보유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평가		
* 고혈압, 당뇨, 이상지질혈증 등에 의한 유소견자(D) 또는 요관찰자(C) 판정자		
※ 평가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장년근로자(만50세 이상) 다수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여 최종 5개소 평가		
※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“해당지표 평균점수” 적용		
☐ 평가산식		
○ 실시율(%) = (적정 사업장수 ÷ 선정 사업장수) × 100		
☐ 판단기준		
○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 내용의 적정성 확인		
- 평가기준 ①의 “실제 실시한 경우”란 뇌심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후 발병위험도 평가 도구*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		
* KOSHA-Guide H-200-2018 (직장에서의 뇌·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 관리지침) 및 기타 평가도구를 폭넓게 인정		
증빙서류		
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결과(해당시)		

B.1.2	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(배점: 200)	
평가항목 B.1.2.6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
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지도	①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를 누락 없이 실시하고 그 중 80% 이상을 실제 작성한 경우	☐ 30
	②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80% 이상인 경우	☐ 20
	③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% 이상인 경우	☐ 10
	④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% 미만인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지도를 통한 질식재해 예방 효과 거양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지도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(밀폐공간 파악, 환기, 가스농도측정, 적정보호구 착용, 사고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작업지도 내용 등 작성 포함) 내용의 적정성 평가 ※ 단순 양식 등의 제공은 인정되지 않음 ☐ 평가대상 ○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(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평가) ※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“해당지표 평균점수” 적용 ☐ 평가산식 ○ 실시율(%) = (적정 사업장수 ÷ 선정 사업장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평가기준 ①의 “실제 작성한 경우”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지도 후 실제 작성을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*로 확인되어야 함 * KOSHA-Guide H-80-2021(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)을 활용하여 작성	
증빙서류	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(해당시)	

B.1.2	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(배점: 200)	
평가항목 B.1.2.7	평가기준 (배점: 30)	평가결과
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지도	①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지도를 누락 없이 실시하고 그 중 80% 이상을 실제 작성된 경우	☐ 30
	②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지도실적이 80% 이상인 경우	☐ 20
	③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지도실적이 60% 이상인 경우	☐ 10
	④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지도실적이 60% 미만인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지도를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 효과 거양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지도 내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☐ 평가대상 ○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 발생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 의한 분진작업 해당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(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) －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수립·시행 대상 사업장 우선 선정 ※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“해당지표 평균점수” 적용 ☐ 평가산식 ○ 실시율(%) = (적정 사업장수 ÷ 선정 사업장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지도내용(예시) : 환기장치(성능 등), 습기유지, 사용전 점검, 청소, 유해성주지, 세척시설, 보호구 지급 및 보관함 설치, 호흡기보호 프로그램(단,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인 경우 해당) 등 ○ 평가기준 ①의 “실제 작성한 경우”란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작성지도 후 실제 작성을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*로 확인되어야 함	
증빙서류	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사업장 관리카드, 호흡기보호 프로그램(해당시)	

B.1.2	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(배점: 200)	
평가항목 B.1.2.8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
청력보존 프로그램 지도	① 청력보존프로그램작성을 누락 없이 지도하고 그 중 80% 이상이 실제 작성한 경우	☐ 20
	②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80% 이상인 경우	☐ 15
	③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% 이상인 경우	☐ 10
	④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% 미만인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(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)에 의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작성지도 및 사후관리를 통한 소음성 난청 예방효과 거양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dB(A)를 초과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(D₁)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지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☐ 평가대상 ○ 작업환경측정,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음수준이 90dB(A) 초과 또는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(D₁) 발생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(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) ※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“해당지표 평균점수” 적용 ☐ 평가산식 ○ 실시율(%) = (적정 사업장수 ÷ 선정 사업장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청력보존프로그램 프로그램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인 – 평가기준 ①의 “실제 작성한 경우”란 청력보존 프로그램 작성지도 후 실제 작성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*로 확인되어야 함 * KOSHA-Guide H-61-2012 (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·시행지침)를 활용하여 작성	
증빙서류	○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청력보존 프로그램(해당시)	

B.1.3	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(배점: 50)	
평가항목 B.1.3	평가기준 (배점: 50)	평가결과
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	①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3% 미만인 경우	☐ 50
	②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6%미만인 경우	☐ 40
	③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9% 미만인 경우	☐ 30
	④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12% 미만인 경우	☐ 20
	⑤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12% 이상인 경우	☐ 10
평 가 취 지	○ 위탁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률 제고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위탁사업장의 “보건관리자”로서 사업장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의 건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○ 평가대상기간 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건강분야 조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보건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위탁사업장에 대한 점유율로 평가 – 전체 위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건강분야 조항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보건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의 점유율로 평가 ☐ 평가산식 ○ 점유율(%) = (과태료 부과 사업장수 ÷ 전체 위탁 사업장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고용노동부의 직업건강분야 과태료 처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	
증빙서류		
	○ 공단 사전 평가	

B.1.4	위험성 평가 신청 및 인정률 (배점: 40)		
평가항목 B.1.4	평가기준 (배점: 40)		평가결과
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및 인정률	신청 율	위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5% 이상인 경우	☐ 20
		위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3% 이상인 경우	☐ 15
		위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1% 이상인 경우	☐ 10
		위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1% 미만인 경우	☐ 5
	인 정 율	위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3% 이상인 경우	☐ 20
		위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2% 이상인 경우	☐ 15
		위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% 이상인 경우	☐ 10
		위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% 미만인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		
○ 위탁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에 의한 위험성평가 이행을 제고			
평 가 내 용			
☐ 평가방법 ○ 위험성평가 인정시스템(KRAS)을 통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신청한 사업장 비율(신청율) 및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업장 비율(인정율)을 합산하여 평가 ☐ 평가대상 ○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(건설은 120억, 토목 150억 미만) 전수를 대상으로 평가 ※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“해당지표 평균점수” 적용 ☐ 평가산식 ○ 신청률(%) = (위험성평가 신청 사업장수 ÷ 대상 사업장수) × 100 ○ 인정률(%) = (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수 ÷ 대상 사업장수) × 100 ☐ 판단기준 ○ 위험성평가(신청 또는 인정) 사업장수 산정은 평가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인정된 사업장만 인정 ○ 신청사업장은 KRAS 신청 후 민원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평가 ※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을 취소한 건은 신청 사업장수 실적 제외 ○ 인정사업장은 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 결정통지 날짜 기준임			
증빙서류			
○ 위험성평가 신청 및 인정심사 결과(KRAS)			

B.1.5	위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(감점: -30점)	
평가항목 B.1.5	평가기준 (감점: 최대 - 30점)	평가결과
위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	미흡한 기술지도 건수 x (- 5 점) [최대 - 30점]	_____ 점
평 가 취 지	○ 위탁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특성을 반영한 기술지도 및 개선 노력도를 평가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의 K2B 입력현황 기준으로 평가 ☐ 평가대상 ○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의 샘플링 최소 2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확인 ※ 방문사업장은 기관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사업장에 평가 당일 방문 협조 요청 [방문사업장 우선 선정 대상] - 최근 1년 이내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(평가대상기간 공단 재해통계 발생기준) - 화학물질 취급사업장(작업환경측정 결과, 노출기준 50% 초과사업장 우선 선정) -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(C), 유소견자(D) 다수 보유사업장 ☐ 평가산식 ○ 미흡한 기술지도 건수 x (-5 점) (최대 - 30점) ☐ 판단기준 ○ 사업장관리카드, 상태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선정된 사업장의 공정, 설비 등을 파악하고 주요 업무상질병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지도내용의 충실성 및 개선 노력도를 평가 ① 사업장관리카드, 상태보고서 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② 주요 업무상질병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지도내용이 누락된 경우 ③ 주요 업무상질병 발생공정·요인에 대한 지도내용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경우	
증빙서류	○ 기술지도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, 사업장관리카드, 상태보고서	

B.2 재해감소

B.2.1	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 (배점: 50)		
평가항목 B.2.1	평가기준 (배점: 50)		평가결과
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	'21년 대비 '22년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이	① 10% 이상인 경우	☐ 50
		② 7%이상 10%미만	☐ 40
		③ 4%이상 7%미만	☐ 30
		④ 3%이하인 경우	☐ 20
	⑤ '21년 대비 '22년 업무상질병 만인율이 증가한 경우		☐ 10
평 가 취 지			
○ 보건관리 지도 성과 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보건관리 수준향상 유도			
평 가 내 용			
☐ 평가방법 ○ 위탁사업장의 업무상질병 감소 수준 평가			
☐ 평가대상 ○ 평가 직전년도 1년간 지속 위탁한 사업장 전수를 대상으로 평가			
☐ 판단기준 -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성과 평가 기준 ① 기준통계 : 정부 공식통계를 활용하되 공식통계 발표 이전에는 잠정통계 활용 ② 산입대상 : 업무상질병(진폐, 소음성난청 제외), 밀폐공간 질식재해 ③ 사망자 가중치 : 이환자(부상자)의 10배(사망 1명 = 이환자 10명) ④ 감소율(%) = ((전년도 만인율-전전년도 만인율)÷전전년도 만인율) × 100			
증빙서류			
○ 공단 사전 평가			

B.2.2	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 (배점: 20)	
평가항목 B.2.2	평가기준 (배점: 20)	평가결과
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	① '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' 지도 및 사후관리를 8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20
	② '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' 지도 및 사후관리를 5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15
	③ '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' 지도 및 사후관리를 2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10
	④ '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' 지도 및 사후관리를 20% 미만 실시한 경우	☐ 5
평 가 취 지	○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업의 올바른 건강증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함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(근로자 근로·건강특성 파악, 건강 잠재적 위험도, 건강 증진 활동 요구도, 추진수준 평가결과, 활동수준, 우수지원 분야 등 명시) 및 사후관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 - 해당 사업장의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시 적정 ☐ 평가대상 ○ 위탁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평가 ☐ 평가산식 ○ 실시율(%) = (적정 사업장수 ÷ 선정 사업장수) × 100	
증 빙 서 류	○ 상태보고서,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결과, 기업건강지수 보급관련 증빙서류	

B.3 만족도 및 우수사례

B.3.1	지도사업장 만족도 (배점: 40)	
평가항목 B.3.1	평가기준 (배점: 40)	평가결과
지도사업장 만족도	① 평가점수 합계 90점 이상	☐ 40
	②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	☐ 30
	③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	☐ 20
	④ 평가점수 합계 60점 이상	☐ 10
	⑤ 평가점수 합계 60점 미만	☐ 5
평 가 취 지		
○ 지도사업장 만족도 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유도		
평 가 내 용		
☐ 평가방법 ○ 공단 직접조사 또는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지도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- 설문지는 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20점 만점에 5점 척도로 구성 ※ 설문 문항 : ① 현장 방문 시 사전 업무준비, ② 현장에 적합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여부, ③ 보건지도인력의 적극성, ④ 보건정보의 원활한 제공, ⑤ 해당 사업장의 재해예방 기여도		
☐ 평가대상 ○ 응답 사업장 중 3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각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 (30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) ※ 응답 사업장이 없는 경우 “이 지표의 평균점수” 반영		
증빙서류		
○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		

B.3.2	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 노력도 (배점: 10, 가점: 최대 +20점)	
평가항목 B.3.2	평가기준 (배점: 10)	평가결과
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 노력도	①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류를 제출한 경우	☐ 10
	② 우수사례 미제출	☐ 0
	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여부 (가점: 최대 +20점)	
	①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	☐ +20
	②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	☐ +15
	③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	☐ +10
평 가 취 지	○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전반적인 보건관리 수준향상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보건관리 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기관별 우수사례 심사 결과 및 수상실적을 평가 ☐ 판단기준 ○ 평가대상기간 내에 우수사례 제출 여부, 서류심사 결과 및 수상실적에 따라 평가 - 발표대회에 “대상” 없이 “최우수상”이 가장 높은 상인 경우 가점 +20점 부여	
증빙서류	○ 우수사례 발표대회 관련 문서	

B.4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

B.4.1	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(감점: 최대 - 100점)	
평가항목 B.4.1	평가기준 (감점: 최대 - 100점)	평가결과
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	중대재해(업무상질병) 발생건수 ___건 × (-10)점 = _____점 중대재해(산소결핍 등 질식재해) 발생건수 ___건 × (-50)점 = _____점	_____ 점
평 가 취 지	○ 위탁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여부 평가를 통한 보건관리 지도 내용의 현장 작동성 강화 유도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위탁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여부에 대해 평가 ○ 업무상질병 및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2가지로 구분하여 계약기간 내 재해발생일 기준 적용 ☐ 판단기준 ○ 평가대상 중대재해의 정의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(중대재해의 범위)에 해당하는 재해 중 업무상질병,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(질식) 재해에 한함 ○ 중대재해 중 업무상질병에 관한 재해는 발생 건수 1건당 10점 감점,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발생은 1건당 50점 감점, 최대 100점 감점으로 평가	
증빙서류	○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DB	

B.4.2	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(감점: 최대 - 100점)	
평가항목 B.4.2	평가기준 (감점: 최대 - 100점)	평가결과
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	산재은폐 처벌건수 _____건 × (- 10)점 = _____ 점	_____ 점
평 가 취 지		
○ 위탁사업장의 보건분야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건수를 평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재예방 의식 고취 유도		
평 가 내 용		
☐ 평가방법 ○ 위탁사업장에서 보건분야 산재은폐(미보고, 지연보고 포함)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한 평가 ○ 보건분야 산재은폐로 처벌받은 건수 1건당 10점 감점, 최대 100점 감점으로 평가		
증빙서류		
○ 지방노동관서 처벌조치 관련사항 사전 파악		

B.4.3	기술지도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(가점: 최대 +100점)	
평가항목 B.4.3	평가기준 (가점: 최대 +100점)	평가결과
위탁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	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건수 ____건 × 20점 = _____ 점	_____ 점
평 가 취 지	○ 직업병 감시·중재 체계 활성화를 통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초동대처 강화	
평 가 내 용	☐ 평가방법 ○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발생 시 직업병 안심센터 등 신고 및 대응한 사례를 평가 ○ 신고 건수 1건당 20점 가점, 최대 100점 가점으로 평가 ※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사전 미인지 사안에 대한 기관 신고 시 적용	
증빙서류	○ 공단 일선기관별로 사전 파악	